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수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8377호)

2026. 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 요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검토의견	2
1.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2

I. 개 요

1.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수영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6. 4. 16.
- (3) 회 부 일 : 2026. 4. 1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함)을 공급받아 이를 제조·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인 면세농산물등의 구입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의제해 그 구입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음. 특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고물가로 인한 원재료 가격·인건비의 상승, 경기둔화로 인한 외식 수요 감소 등으로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세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세제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Ⅱ. 검토의견

1.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제42조) ☐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다음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음식점업] ① 과세유흥사업자: 2/102 ② 개인사업자: 8/108 - 단,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9분의 9 · 적용기한: <u>2026년 12월 31일</u> ③ 기타: 6/106 [제조업] ①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떡방앗간 경영 개인사업자: 6/106 ②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4/104 ③ 기타: 2/102 [그 밖의 사업] 2/102	☐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우대공제율 적용 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음식점업]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인사업자: 8/108 - 단,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9분의 9 · 적용기한: <u>2029년 12월 31일</u> ③ (현행과 같음) [제조업]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그 밖의 사업] (현행과 같음) ☐ 부 칙 ☐ 시행일: 2027년 1월 1일

* 박수영 의원안 2026. 4. 16. 발의(의안번호 18377)

□ 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규모 음식점에 대하여 적용되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소규모 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 특례는 농·수·축산물 등의 가격 상승으로 소규모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18년부터 도입·시행되었는데, 동 규정 신설 당시에는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세 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되었으며,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 「부가가치세법」 제42조¹⁾에 따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는 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함)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인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을 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해 주는 것임.

○ 현재 농산물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²⁾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음. 그런데 음식점

1)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사업자가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7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제28조에 따라 면세를 포기하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면세농산물등을 공급받거나 수입할 때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농산물등의 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등의 사업장에서 면세가격으로 농산물 등을 구매하여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중간단계에서만 이루어지고 그 전(前) 단계와 다음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발생³⁾하는 문제가 있음.

- 환수효과와 누적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면세농산물등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전단계(농산물의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이 농산물 등의 공급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

농산물 판매자는 면세사업자가 되어 전 단계에서 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농산물 가격을 인상하여 판매하고, 음식점 등 다음 단계의 사업자도 농산물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다시 본인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가격에 반영하여 판매하게 됨.

결국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최종 소비자가격이 면세가 적용되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인상되고, 소비자가격의 10%에 해당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3) ‘환수효과’는 면세된 거래의 다음 거래단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따라 앞서 과세를 포기했던 부가가치세수가 다시 국고에 환수되는 것을 말하며, ‘누적효과’는 면세 전 단계에서 이미 과세된 부분에 대해 이중과세되는 것을 말함.

- 4)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하는 부가가치세 또한 같이 인상되는 결과가 발생함.

-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이와 같은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를 일부 제거함으로써 중복과세 및 소비자에 대한 부담전가 문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가격 보조를 하기 위한 목적도 있음⁵⁾.

- 음식점을 경영하는 과표 2억원 이하의 개인 일반과세자가 신고한 연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금액은 2021년 14.4조원에서 2024년 11.4조원으로 연평균 7.7% 감소하는 추세임.

[소규모 음식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금액]

(단위: 억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률
공제대상금액	144,405	140,244	138,342	113,685	△7.7

주: 1. 공제대상금액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신고내역을 집계한 것으로, 확정신고 및 결정·경정 전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2. 연간 금액은 1기 및 2기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함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소규모 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을 연장하려는 동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음.

5) 박명호, “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24-26쪽, 2012. 8.

- 이 견해는 1977년 7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시 정부가 밝힌 개정이유에 근거한다. 정부는 실제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해 물품을 구입하는 매입세액은 농수산물 등의 판매액 대비 약 5% 정도로 과약하였다. 따라서 당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10/100=약 9.1%)과 5%의 차액인 4.1% 정도를 정부에서 농어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성격으로 보았다.

첫째, 최근 물가 상승 및 식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영세 음식점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외식업체의 영업비용 중 식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2025년 동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외식업체 설문조사 결과 경영상 애로사항에 관해서는 일반음식점 및 그 외 업종 모두 식재료비 상승을 가장 높은 항목으로 꼽았으며, 지역별·매출규모별로도 가장 큰 애로사항은 식재료비 상승으로 나타났음.

[매출액 규모별 외식업체 사업실적 현황]

(단위: 만원, %)

구 분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1억원 미만	1억원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2023	매출액	3,304	7,649	22,201	96,599
	영업비용(A)	3,305	7,152	19,910	81,249
	식재료비(B)	1,316	3,007	8,510	34,015
	(B/A)	39.8	42.0	42.7	41.9
	영업이익	-1	497	2,291	15,350
2024	매출액	3,211	7,738	23,483	91,372
	영업비용(A)	3,074	7,304	21,583	80,882
	식재료비(B)	1,283	3,101	9,374	37,813
	(B/A)	41.7	42.5	43.4	46.8
	영업이익	137	434	1,900	10,490
2025	매출액	3,544	7,846	22,910	93,879
	영업비용(A)	3,357	7,317	20,858	85,735
	식재료비(B)	1,546	3,221	9,047	40,381
	(B/A)	46.1	44.0	43.4	47.1
	영업이익	187	530	2,053	8,143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2025년 외식업체의 경영상 애로사항 현황]

(단위: %)

구 분		구인난 -조리 (주방)	구인난 -홀서빙 및 카운터	식재료 비 상승	임차료 상승	인건비 상승	경쟁 심화	제도적 규제
전체	계	53.4	57.8	94.1	79.9	76.3	86.9	76.8
업종	일반음식점	55.4	59.2	95.0	77.3	77.4	86.0	75.6
	일반음식점 외	51.3	56.4	93.2	82.5	75.2	87.9	78.1
운영 형태	프랜차이즈	59.2	61.5	94.3	87.4	82.1	89.1	79.9
	비프랜차이즈	51.3	56.5	94.0	77.1	74.2	86.1	75.7
지역	서울권	56.0	63.4	85.2	78.1	76.1	80.2	75.8
	수도권	75.1	80.1	95.7	91.2	87.0	86.2	80.4
	충청권	68.2	74.8	96.3	80.3	89.3	91.2	81.5
	호남권	48.7	48.0	97.0	77.6	82.4	87.4	77.6
	경남권	26.8	31.9	94.4	71.6	62.8	87.8	63.4
	경북권	44.4	47.0	95.4	80.8	54.4	87.7	86.0
매출액 규모	5천만원 미만	19.5	25.2	89.0	61.1	43.2	70.3	41.3
	5천만원~1억원 미만	41.2	46.9	94.9	74.2	62.6	84.2	73.7
	1억원~5억원 미만	55.8	60.2	94.2	82.3	79.5	88.2	79.1
	5억원 이상	72.5	74.0	94.5	78.3	91.4	88.5	80.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 외식업체 경영실태조사」

둘째,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연장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을 완화함으로써 민생 안정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6년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9.99(2020년=100)으로, 2025년 6월 116.31 대비 3.16% 상승하였고,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 중 외식의 경우 2026년 6월 128.06(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2025년 6월) 124.79 대비 2.6% 상승하였음. 2020년 대비 2026년 물가지수를 비교

하면, 외식 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크게 증가하였는바,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연장을 통해 외식 물가 상승효과를 일부 억제하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관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원칙적으로 ‘면세 농산물등 구입 전단계(농산물의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중복과세를 방지하려는 것인데, 농수산물 생산자에게 면세유 등 다양한 종류의 세제 혜택⁶⁾이 제공됨에 따라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소규모 음식점 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우 낮은 수준⁷⁾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과표 2억원 이하 개인 일반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를 3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7년 570억원 등 2027~2030년 4년 간 총 2,111억원(연평균 52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6)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자경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등

7) 농축산물 생산비 조사(통계청) 등을 활용한 부가가치세 부담 추정치(%): (쌀) 0.35 (마늘) 0.12 (고추) 0.78 (육우) 0.44 (육계) 0.81 (육돈) 0.62 (자료: (구) 기획재정부)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연장시
세수효과]

(단위: 억 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계	△570	△717	△662	△162	△2,111	△528
국세 (74.7%)	△426	△535	△494	△121	△1,577	△394
지방소비세 (25.3%)	△144	△181	△167	△41	△534	△133

주: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 당해연도 귀속분의 경우 당해연도에 3/4 징수, 차년도에 1/4 징수되는 것으로 전제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7